

2025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2025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요 일정 및 변경 사항 >

< 주요 일정 >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4년 10월 7일 ~ '25년 1월 6일	'25년 1~3월	'25년 4월 ~

<2024년 대비 2025년 사업 변경 사항> (□는 생략가능)

구분	2024년	2025년
신청방법	도입기업 단독으로 사업신청서 접수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계획서 접수
접수시기	'24. 3월 ~ 4월(1개월 내외)	'24. 10월 ~ '25. 1월(약 4개월)
신청기업	뿌리기술 14개 업종 및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대사항	-	'24 CBAM 대응인프라구축 사업(중진공) 선정기업 서면평가 면제
가점	25개 항목에 대해 항목당 3점, 최대 5점 인정 단, 별도 4개 항목은 추가 5점 부여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당 3점, 최대 5점 인정
관리절차 변경사항	최종감리 ▶ 완료점검 ▶ 집중A/S ▶ 최종평가	최종점검 ▶ 최종평가 ▶ 집중A/S ▶ 최종재평가
중간점검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	기술설계완료 후 진행(협약후 3개월 내)
최종점검	최종감리 후 완료점검 진행	최종점검으로 통합
집중A/S	집중A/S 6개월 필수 수행	최종평가 결과 "보완" 시 집중A/S 및 재평가 추진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사업(舊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안내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급기업 추천 등이 필요한 기업은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24.7월 기 공고)'을 통해 컨설팅 및 공급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컨설팅 수행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가능하며, 최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구축예정인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중간점검 전까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 컨설팅 횟수 4회, 기업은 컨설팅 비용(21만원(VAT미포함)) 자부담 필요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제로의 전환 촉진

□ 지원 내용

- (구축지도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전체 구축과정에 걸쳐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변경사항 관리, 성과측정 등 전주기 지원
-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FEMS 구축과 고효율 설비개체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 (FEMS 솔루션) 공정·설비 에너지사용량 관리에 특화된 에너지 효율향상 솔루션(FEMS) 구축 지원
 - (제어·계측 디바이스)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설비 및 FEMS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 및 계측 디바이스
 - * 센서, 전력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유량계, 계측값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절감 알고리즘 설계, 액츄에이터, PLC·HMI·DCS 등 제어장비 등
 - (고효율 설비 개체) 에너지 다소비 설비, 노후 유틸리티 및 변압기, 고효율 수변전 시스템 및 스마트 배전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개체 도입 지원
 - * 유틸리티 설비는 생산 공정과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독립 운영 설비(사무실용 에어컨·냉장고·정수기, 난방용 전열기 등)는 지원 불가

< 예시 >

- 에너지 효율화 수준 향상을 위한 FEMS 신규 도입 및 기능 개선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및 시스템 연동
-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및 기존 시스템 연동

□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0개 내외(변동 가능)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2억원) 이내(최대 9개월 이내)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수준향상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5억원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FEMS 솔루션에 한하여 지원 가능(MES·ERP 등 타 솔루션 지원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착수 시 구축 공정(설비) 內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의무적 설치

2.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0월 7일(월) ~ 2025년 1월 6일(월) 17시 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량 과다로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전 제출 완료 필요)
-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 공고명에 '탄소중립형' 검색 → 접수 신청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신청 전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p style="text-align: center;">도입기업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도('21~'23)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련 증빙(엑셀파일 작성 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연료사용량 관련 고지서등 탄소배출량 산정 활용 증빙자료 별첨 ○ 최근년도('23~'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ESG 자가진단 보고서 1부(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통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및 인증 → ESG 자가진단 → 진단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시 보고서 업로드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서(도입·공급기업 작성 후 도입기업에서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도입기업은 종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자격

- (도입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고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제외사항) 신청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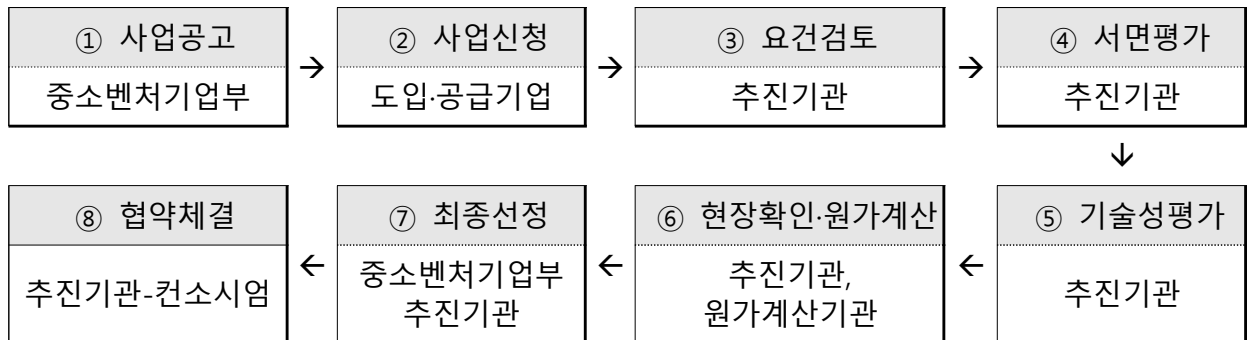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지원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등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절차



□ 평가 절차 (평가지표 붙임1 참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방법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의 서면평가를 통해 목표수 1.5배수 내외 선발	○ 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
기술성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 발표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 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공급기업 역량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 ○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현장을 확인하여 적/부 판정 ○ 사업비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여부 및 가점 확인 ○ 원가계산기관을 통한 사업비 원가 검토 등 사업비 조정
최종선정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지원 및 후보과제 선정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기업 역량 등을 서면으로 평가
 - * '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인프라구축 사업 선정기업은 서면평가 면제
-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지원필요성, 지원적정성, 공급기업역량, 파급효과 등을 대면(발표)으로 평가
-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등 진행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가능여부 확인
 -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지원과제 확정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공급기업 추천 등이 필요한 기업은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24.7월 기 공고)'을 통해 컨설팅 및 공급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 '동일수준'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비용) 회계 정산 수수료, 교육비 및 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비용에 필수 편성, 미편성 시 총 사업비와 별개로 도입기업 부담

-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천원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천원	
400백만원 이하	910천원	
400백만원 초과	1,182천원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교육비)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을 위한 교육비 100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비)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를 위한 비용 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정보를 보관하여 개발결과, 보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동일수준 최대 1천만원, 고도화 4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를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 교육 이수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기술교육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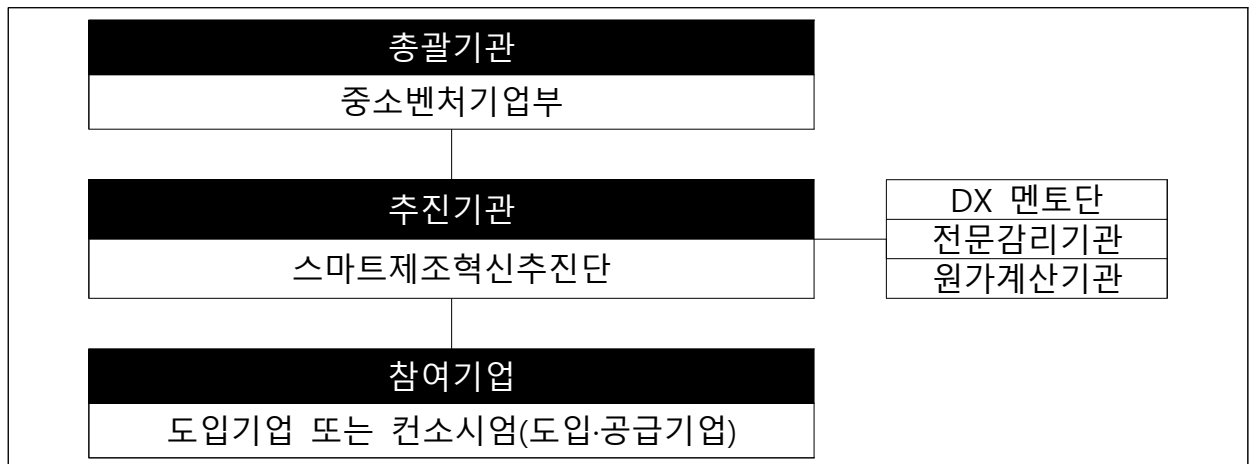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세부관리기준 제개정 -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또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등

6. 문의기관

□ 담당기관 연락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6, 0960
시스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평가 지표

□ 서면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30)	◦ "AS-IS/To-BE"의 내용이 탄소저감 전략(현재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10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적용) 하고자 하는 요소가 수출품목 또는 수출품목 생산공장과 어느정도로 부합되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에너지/생산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목표수준" 달성에 가능한가?	1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40)	◦ S/W(솔루션 등) 및 H/W 구축 내용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에너지 지표 설정 근거 제시,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지표 계산식 제시, 탄소저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	5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탄소저감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5
	◦ "에너지/생산 등의 정보 수집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다소비 공정,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는가?	5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도입기업 역량 (30)	◦ 에너지/생산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역량을 보유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5
	◦ 기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및 활동을 수행한 노력이 있는가?	5
	◦ 매출액 증가율	5
	◦ 영업이익 증가율	5
	◦ 부채비율	5
	◦ 수출실적 여부	5
합 계		100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항목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증가율	12%이상	12%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3%이상	3%미만
영업이익증가율	10%이상	10%미만~7.5%이상	7.5%미만~5%이상	5%미만~2.5%이상	2.5%미만
부채비율	60%미만	100%미만~60%이상	140%미만~100%이상	180%미만~140%이상	180%이상
수출실적	○	-	-	-	X

-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 * '2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기술성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30)	◦ 탄소 배출이 기준 이상(탄소배출량 1,000tC ₂ 기준)으로 발생하거나, LCA, CF100 등 공급망에서 탄소저감에 대한 요구있거나 규제대상 제품인가?	10
	◦ 도입기업의 공정프로세스 중 탄소배출 및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 명확한 현황제시가 되었는가?	10
	◦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 후 탄소저감, 에너지저감 등 구축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1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 (45)	◦ 기업현황, 생산공정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해당 "목표수준" 제시 및 달성이 가능한가? (에너지 효율화 관점)	10
	◦ 수행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데이터가 분석·활용되도록 스마트화 추진내용이 제시되었는가?	10
	◦ 도입기업의 주요 에너지 다소비 공정, 설비와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도록 수집데이터 및 신뢰성 있는 수집방법이 제시되었는가?	10
	◦ 탄소저감 목표에 따른 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이 타당한가?(에너지 지표 설정 근거 제시, 구축목표-구축내용-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지표 계산식 제시, 탄소저감 목표치 등의 적절성, 객관적인 측정방법)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5
공급기업 역량 (25)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행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능력이 충분한가?	5
	◦ 탄소중립 대응에 효과적인 기술(AAS, 클라우드, 표준형FEMS 등)의 적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고, 관련 시장 확대가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참여 투입인력(개발 PM 등)과 업무 인프라가 사업수행에 적합한가?	5
파급효과 (10)	◦ 탄소감축 우수사례 창출 및 동일·유사 업종으로 적용·확산 가능성	5
	◦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경영성과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지원 적정성, ③지원 필요성, ④공급기업 역량, ⑤파급효과'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4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2	스마트 제조 표준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사업계획서 (2.6 표준연계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3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4	「글로벌강소 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